## 하나대체미국발전소 EOD 대비 주요 Agenda

1. Note Purchase Agreement 상 EOD 항목 (Section 8.01 Event of Default)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8.01 거래종결일 이후에 다음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구성함
- (a) 미지급: 원금, 이자 기타 금액의 미지급(이자 및 기타 금액에 대해서는 5 영업일의 치유기간 부여)
- (b) 구체적 특약 위반: 발행회사가 6.03(a)조 Notice (EOD발생, Opco Credit agreement의 EOD 발생 시 Administrative Agent에게 Notice), 6.05(a) 조(Fundamental Changes, Disposition)의 소극적 준수사항, 또는 제 VII 조의 적극적 준수사항의 내용(차주와 관련한 사항) 을 위반한 경우
- (c) 기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기타 위 (a)와 (b)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Administrative Agent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치유하지 못한 경우

- (d) 진술과 보장 위반: 진술 및 보장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중대 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치유가 가능한 경우 30 일의 치유기간 부여)
- (e) 교차 채무불이행: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 (참고) (ii) with respect to any Subsidiary of the Issuer, any event of default (or similar term) has occurred with respect to any Indebtedness having an aggregate principal amount of not less than the Threshold Amount,
- (f) 파산, 또는 도산절차
- (a) 지급 불능 또는 자산에 대한 압류 등
- (h) 특정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의 확정 (i) Note Documents 의 중요 부분의 효력이 (당사자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정지되는 경우
- (j) 허용된 지배구조의 변경(Permitted Change of Control) 이외의 지배구 조의 변화가 있을 경우

_	,
	(k) 담보계약의 효력이 정지되어 유효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I) ERISA(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i) 발행회사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거나, (ii) ERISA Section 4201
	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때 지불 하지 못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 른 구제 방안	8.02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리금융기관은 다음의 구제방안을 활용할 수 있음.
	(a) 미지급된 본건 Note의 원금에 대한 즉시 상환 요구
	(b) 기타 Note Documents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Application of Funds Section 8.04	8.02조(또는 8.0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동으로 지급 기한이 도래한 후)에 따라 Remedies 행사 후, 담보물의 수익금을 포함하여 수령한 금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Administrative agent에 의해 적용되어야한다.
	1. 수수료, 배상금, 비용 및 기타 금액(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제 10.04조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 및 제III조에 따라 지불해 야 하는 금액 포함)을 지불
	2. Holder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 배상금 및 기타 금액(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과 제10.04조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 및 제3조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 포함) 지불
	3. Note의 미지급 이자 및 추정 이자
	4. Note의 미지급 원금
	5. (Agent와 채권자에 대한) 발행인의 채무
	6. 잔액이 남는 경우, 발행자에게 지급하거나 관련법상 처리

# 2. Security Agreement 상 담보내역

Collateral	1.02 – 담보대상자산(Collateral)
	(i) 구체적으로 모든 계좌, 장부, 서류, 유·무형 자산, 장비, 지적재산권,
	손해배상청구권등(Article 9 Collateral, Section 3.01 (a))
	(ii) 질권 담보대상자산(Pledged Collateral, 2.01)

2.01 - 질권 담보대상자산은 다음과 같음 (i)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할 모든 지분권(Equity Interest)->Frontera Intermediate Holdings LLC의 지분 (ii)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할 모든 채무증권 및 약속 어음상 채권 (iii) 본 계약에 따라 담보대리은행에 제공되는 다른 모든 자산 (iv) 위 (i), (ii)에 규정된 채권에 따라 지급받는 원금 및 이자, 배당금 등 일체 (v) 위 (i)~(iv)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수익권 (vi) 위 (i)~(v)로 인한 기타 수익 4.01 - 담보대리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 아래와 같은 **ARTICLE IV Remedies**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Section 4.01. (i) 담보대리은행이 지정한 때와 장소에 담보대상자산을 제공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요구 (ii) 담보대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담보대상자산이 보관된 장소를 점유(단, 발행회사에게 사전 통 지를 하고, 사전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 통지) (iii) 담보대상자산과 관련된 발행회사의 모든 권리 행사(단, 발행회사 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사전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 통지) (iv) 담보대상자산을 처분 - 담보대리은행은 담보대상자산을 처분하기 전 원칙적으로 10일이전에 해당 사실을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발행회사는 채무불이행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담보대리은행이 담보 권 실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의 권 한을 행사함을 인정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담보대리은행이 지출한 비 용을 부담하여야 함

#### 3. EOD 이후 담보권 절차

- (1) HoldCo 대출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함.
- (2) HoldCo 차주는 HoldCo 대출약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치유할 일정한 권리와 기간을 가짐(EOD 사유에 따라 치유기간 상이).
- (3) HoldCo 차주가 채무불이행을 치유하면, HoldCo 대출은 계속 유지됨.
- (4) HoldCo 차주가 채무불이행을 치유하지 못하면, HoldCo 대주는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담보로 질권 설정된 주식(본건의 경우 Frontera Intermediate Holdings LLC 발행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내용을 HoldCo 차주에게 통지함.
- (5) HoldCo 차주가 채무불이행을 치유하지 못하면, HoldCo 대주는 질권 및 담보계약, HoldCo 대출약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6) Collateral Agent는 NPA Section 8.04 Application of Funds에 의거하여 현금을 포함한 모든 담보를 처분할 수 있음.
- (7) 매각이 이루어지면, HoldCo 대주는 매각 수익금을 NPA 상 Application of Funds의 순서에 따라 HoldCo 대출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음.

#### 4. EOD 시 선순위 현금 집행 순서

- (1) Depositary Agent는 First Lien Collateral Agent의 통지 및 지시에 따라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여야함.
- (2) Trigger가 발생한 날부터 First Lien Collateral Agent(또는 그 지시를 받은 Depositary Agent)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있음.
  - A. 각 계좌의 자금(Cash Equivalents)을 현금화 및 투자
  - B. 각 예치금을 처분하도록 지시
  - C. 지급기일이 된 O&M비용 지급
  - D. Section 3.2에 규정된 순서 및 채권자간협약에 따라 이자비용, 통상적인 지급, 해지비용 및 원금상환

## 5. EOD 발생 이후 시나리오 예상

- (1) Blackstone의 Equity 투입
  - Test period에 포함된 마지막 회계분기의 개시일로부터 해당 회계분기 관련 재무 제표 등 정보제공 의무일부터 10 영업일 까지의 기간 동안에 차주는 선순위약정 서 Section 7.11를 기반으로 EOD 여부를 결정하고, Section 7.11에 따른 financial covenant가 위반된 경우에는 Section 8.05에 따라 Equity contribution을 통해 치유할 수 있음.
  - Equity Contribution은 cash common equity로서 차주의 Consolidated EBITDA를 올리는 것으로 간주됨.
  - 차주가 Notice of intent to cure를 보낼 경우, 대주와 Administrative agent는 권한
    을 행사하거나 Remedy를 행사하면 안됨(Section 8.05 (B)).
  - 차주는 Revolving Credit Loan 증액, L/C Credit 연장을 할 수 없음(선행조건 미 충족 시).
  - 연속된 4분기 중 적어도 2분기 이상 Equity contribution을 하지 않았어야 하며,

전체 약정기간 중 최대 5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Financial covenant를 위반하지 않는 금액 한도
- Contribution으로 인해 기존 Pro forma 채무의 감소는 없어야 함.
- (2) OpCo 차주의 선순위 원리금 지급유예 신청
  - Opco 차주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하여 선순위대주에게 선순위 원리금의 지급 과 관련하여 채무이행 유예기간 부여(Forbearance)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미국 현지에서 금융당국에서 대주인 금융기관들에게 차주와의 유예계약 체결을 권고하는 일이 증가하였음. 이 경우 차주가 선순위 대출/HoldCo 대출 모두 유예 혹은 조건 변경을 요청할 가능성 존재함.
- (3) 선순위 대주가 Strict Foreclosure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Opco 주식 취득(Opco 동의 전제)
  - 선순위 대주가 OpCo의 주식을 취득할 시, Change of Control로 HoldCo EOD 발생
  - 선순위 대주의 OpCo의 주식취득가액을 대출상환금액으로 얼마나 인정할 지 검 토가 필요함.
- (4) 선순위 대주가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
  - 자산 매각 후 매각대금은 선순위 피담보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됨.
  - HoldCo(차주)가 남은 잔여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잔여자산으로 Holdco Loan 피담보채무 상환에 사용
  - 따라서 매각대금으로 선순위 피담보채무 및 HoldCo 피담보채무의 대출상환이 가능한 지 여부 검토 필요
- (5) Credit Facility 증액(선순위 2.14)
  - Revolving Credit Loan 및 Letter of Credit 총 원금의 DSCR을 1.05 이상으로 유지 의무조항이 존재하여 현재 재무상태 상 추가 증액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6. 향후 예상(법무법인 자문 참고)

- 예상 시나리오 중 차주가 선순위 대주에게 선순위 원리금 유예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순위 대주단에 의한 유예 승인 시 선순위와 동시에 HoldCo에서도 유예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

- 선순위 대주단이 아직 의사표현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은 상황임.
- 매각 등 선순위의 담보권이 실행 시, 법적으로 HoldCo 대주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며, 또한 HoldCo 대주에게 귀속될 잔여재산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매각, OpCo 주식 취득 등 선순위 담보권 실행 시, 선순위 대주와의 협의를 통해 매각방법 및 금액, 시기 등 HoldCo 채권이 최대한 상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